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9. 4 예규 제3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라 함은 기업경영상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라 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평가항목별로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가대상 사업장) ①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설립 또는 공장가동일이 3년미만인 사업장
2.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착공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정율이 30%미만인 건설공사
3. 사무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4. 기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의 평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② 제2항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평가신청요건) ① 제3조의 평가대상 사업장으로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업장
2.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이하 “평가신청년도”라 한다)를

-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매년도 재해율(건설업은 신청년도의 재해율)이 0.5%(사망만인율은 1.0이하)이거나, 또는 매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1/2이하(사망만인율 1.0이하)인 사업장. 다만, 건설업은 직전년도 재해율을 추정하여 적용
3. 평가신청년도 직전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의 농도는 노동부고시 제 91-21호(유해물질의 허용농도)에 정하여진 허용농도의 1/2 이하인 사업장. 다만, 고온은 동고시에 정하여진 허용기준이하, 소음은 동고시에 정하여진 허용기준보다 5dB(A) 낮은 사업장
 4. 평가신청년도 직전 1년동안 근로자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 다만, 소음성난청 또는 진폐에 대하여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지침에 의한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6.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이하 “노·사 대표”라 한다)가 함께 안전보건관리를 적극 지원·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7.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안전경영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종합적인 진단결과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천된 사업장

② 제1항 제2호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란 별표 1의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적용업종 분류표에 의한 중분류별로 산정된 평균재해율을 말한다.

제5조(평가항목) ① 안전경영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의식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의 재해예방투자 노력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계자 활동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9. 노·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10.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1. 재해조사실시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2. 각종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유지·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6.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7.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8. 재해발생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9.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 2 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의 신청) ①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에서 제5조의 평가항목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신청서(이하 “평가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평가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안전경영진단보고서 1부
2. 안전보건관리조직표 1부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본 1부
4.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 또는 달성장 사본 1부
5. 당해년도 및 평가신청년도 직전 3년간의 재해발생현황 집계표 1부
6. 당해년도 및 평가신청년도 직전 3년간의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 각 1부
7. 위험기계·기구·설비 검사대상, 실시현황 및 검사증 사본 각각 1부
8. 노·사 대표가 함께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지원·참여하겠다는 서약부 1부.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를 협력업체 대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경영대상 수상업체가 제3조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장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진단없이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사확인) ① 지역본부장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종합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평가신청서 및 종합실사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서의 서류확인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요건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 인증등급의 결정) ①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등으로부터 평가신청서 및 종합실사보고서를 송부받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초일류기업 :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
2. 우수기업 :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우수한 기업
3. 보통기업 : 안전보건관리활동이 보통인 기업

③ 이사장은 안전경영대상 수상업체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 요건을 갖추고 초일류기업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안전경영진단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진단없이 초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해당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관계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제9조(인증서 발급) ① 이사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등급이 결정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초일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표 3-2호 서식에 의한 인증서 및 별표 2의 초일류기업 인증패를 수여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은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⑤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인증 등록부에 인증사업장의 명칭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증서 등록부는 일반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인증서 및 인증패(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수여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를 게시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유효기간)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건설업은 1년)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속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인증기간연장신청서에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의 “60일 이내에”는 “30일 이내”로 본다.

제11조(인증서등의 사후관리) ① 이사장은 인증서등을 수여받은 사업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신청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기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인증서등의 반환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등의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경영진단기관

제12조(안전경영진단기관의 기능) 안전경영진단기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제5조에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안전경

영진단보고서를 발급한다.

제 13 조(진단방법) ① 안전경영진단기관이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에 따라 평가한 후, 안전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진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요원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진단반을 구성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요원 자격기준 이상인 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교육을 받은 자를 촉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4 조(안전경영진단기관 지정요건등) ① 안전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진단요원을 3명이상 보유한 자
 - 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술사(또는 안전·위생·건설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업무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 다.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단체 또는 대기기업의 안전보건관리전담부서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으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과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의 사업소개서 및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4.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 및 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규정

제 15 조(안전경영진단기관의 지정) ① 이사장이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안전경영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보고등) ① 안전경영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진단기관의 법적 지위
2. 상근진단요원의 신규채용 또는 퇴직
3. 기타 이사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사항으로써 인증등급 결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② 안전경영진단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경영진단기관이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외국기관과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안전경영진단기관의 의무) 안전경영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진단에 대한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
2. 안전보건관리진단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친 모든 증거의 확보 및 5년간 보관관리

제 18 조(지정취소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진단요원이 진단업무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그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1년에 3회이상 받았거나 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를 명령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당해연도에 평가한 기업의 과반수이상인증을 취소당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경영진단기관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진단요원이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2. 안전경영진단보고서의 허위작성 또는 진단업무의 용역등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경영진단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2.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장의 안전경영진단보고서에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5. 기타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④ 이사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경영진단기관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9 조(자체교육) 안전경영진단기관은 진단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진단방법 및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조(사후관리) ① 이사장은 안전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안전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또는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진단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평가위원회 구성 등

제 2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등) ①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제정 및 인증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노·사대표, 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평가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22조(간사) ①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3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개정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등급 결정
3.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안전보건관리평가지수의 적합성

제 5 장 보 칙

제 25조(평가담당부서 설치 등)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6조(윤리규정등) ① 공단 및 안전경영진단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및 진단요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직원 및 평가위원회 위원은 안전경영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조(평가절차 및 기준제정) 이사장은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 인증절차, 평가위원회구성·운영 및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지정·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28조(비밀유지) ① 공단등의 소속직원 및 평가위원회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업무수행중에 입수한 사업장 내부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소속직원 및 진단요원이 제1항의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간행물) 공단등은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제30조(이의 신청 및 불만관리) ① 이사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회신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 관계인이 제시한 불만 및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인증서의 오·남용에 대한 조치) ① 이사장은 인증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인증사업장이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증사업장이 광고 및 상품안내서 등에서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시정요구,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위반의 공표, 인증서의 회수 및 인증취소 등을 포함한다.

제32조(혜택) 초일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증일로부터 2년(건설업 1년)간 산업안

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각종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의 배제

2. 인증일로부터 2년(건설업 1년)간 재해조사의 유예. 다만, 사망등 중대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재해, 근로자의 고소·고발 또는 진정제기에 의한 범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3. 초일류기업에서 추천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 지원

4. 산업안전보건대회시 정부포상 및 안전경영대상의 우선 선정

5. 기타 노동부장관이 부여하는 혜택

제33조(기술지원) ① 이사장은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업장에서 기술지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순회기술지도등의 방법으로 우선 지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및 발간물을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업장에 우선 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① 이사장은 인증서등 발급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안전경영진단기관은 안전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규모, 근로자수, 업종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적정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